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66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서범수・김소희・장동혁

이헌승 · 이양수 · 윤영석

송석준·김승수·박충권

서일준 • 이인선 • 고동진

박정하 · 성일종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·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있음.

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·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

도 시·군·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(안 제21조)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"를 "제49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"중앙토지수용위원회"를 각각 "토지수용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 시·군·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,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 등) ①	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	2
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	
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· 인가 ·	
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	
제되는 지구지정・사업계획승	
인 등을 하려는 경우 <u>제1항에</u>	<u>제49조</u>
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	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
<u>수용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야 하며,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	
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
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	③ <u>토지수용위</u>
<u>용위원회</u> 는 제1항 또는 제2항	원회
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	
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	
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	
행 여부, 허가 • 인가 • 승인대상	
사업의 공공성, 수용의 필요성,	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	
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	④ <u>토지수용위</u>

<u>용위원회</u> 는 제3항의 검토를 ·	위
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	7]
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	를
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	수
있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	게
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	수
있다.	

-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 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 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 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 가・인가・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 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 다.
- ⑦ 제49조에 따른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

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⑧ (생 략)

----.

⑧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 회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 시ㆍ 군ㆍ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 여야 하며, 이외의 사업에 대하 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.

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